

# TV / T-COM 상품 선정기준 및 입점절차



2023. 03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주)엔에스쇼핑의 방송을 위한 상품 및 협력사 선정 시, 투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상품 선정 시 공정한 경쟁 및 복수 협력사 거래(협력사 거래 편향 방지)를 통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며,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방송으로서 가져야 할 공익성 및 공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 원칙)

- ① 이 기준은 (주)엔에스쇼핑 웹사이트의 “상품입점” 사이트를 통해 공지하고, (주)엔에스쇼핑의 TV홈쇼핑 방송을 위한 개별 입점 상담 시에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주)엔에스쇼핑은 매월 1회 신규 및 기존 협력사교육(SCM팀 주관)을 통하여 해당 기준을 지속 고지 및 상호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주)엔에스쇼핑은 입점을 희망하는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상품기술서 및 회사의 일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문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받은 상품기술서는 (주)엔에스쇼핑의 해당 상품 담당MD와 QA팀 담당자가 사실 확인을 하고, 회사 일반 현황은 (주)엔에스쇼핑의 영업지원팀과 준법지원팀에서 사실 확인을 하며, 제출한 문서가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시에는 소비자 보호와 공익성 유지 측면에서 입점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 제2장 (상품 및 협력업체 선정 절차)

### 제3조 (상품 선정 절차)

- ① (주)엔에스쇼핑의 TV홈쇼핑 방송을 위한 상품 선정은 온라인을 통해 제안 받은 상품에 대해 “제3장 (상품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주)엔에스쇼핑의 해당 상품 담당MD가 진행한다.
- ② 제1항을 통해 기준에 부합된 상품에 대해서는 QA팀을 통해 상품군별 정해진 기준에 의거한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한다.
  1. 단, 홈쇼핑을 통해 최초로 소개되는 Risk관리 상품군 1)의 경우, “제5장(품질 및 소비자보호)”에 의거, 준법지원팀과 영업지원팀의 2)Risk관리규정에 따른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상기 제1~2항을 통해 기준에 부합된 상품에 대해서는 영업지원팀을 통해 납품업체의 재무 건실성과 A/S 이행능력 등 “제4장(입점협력사 건실성)”에 의거하여 전반적인 협력업체 신용 평가를 거친다.
- ④ 협력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입점 제안 된 내역에 대해 [상품접수 현황조회]를 클릭하여 진행 현황을 알 수 있으며, 입점불가 판정을 받은 제안 내역에 대해서도 담당MD의 불가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다.

## 제3장 (상품 평가기준)

### 제4조 (상품평가 기준)

- ① 협력업체로부터의 상품 제안, MD를 통한 협력사 및 상품 제안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입점 경로를 단일화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을 통해 제안 받은 모든 신규 협력사와 상품을 1차 MD가 검토하고, 해당 사업부 상품 개발회의를 통과한 상품에 한해 상품선정위원회(이하 상선위)에 상정하여 상품 평가를 받는다.

신상품 상정 상품은 상선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항목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1. 상품 품질/ 디자인
  2. 식품 (맛) / 공산품 (기능)
  3. 가격적합성
  4. 고객 사용 편리성
  5. 구매의사
- ② 해당 상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 할 경우에 대하여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항목별 가산점을 부여하며,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하기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을 우선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제조사 및 유통업체가 공급하는 상품
  2. 장애인관련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3. 농수축임어업인이 제조하거나 농수축임어업인이 직접 공급하는 상품
  4. 기타 소외 계층이 공급하거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심의에관한규정 64조(방송금지)에 해당하거나, 기타 방송심의상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입점제안을 반려하며, 담당MD는 해당사유를 협력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 Risk관리상품

- 설치가구
- 스포츠, 레저 헬스용품 중 AS상품
- 자동차 용품 (차량 전원 연결 제품 등)
- 가전제품 (생활가전, 주방가전, 계절가전, 이미용기기, 건강용품(마사지기 등), 기타 전기용품)

- 2) Risk관리규정:본 규정은 상품 결함,과장 광고,협력업체의 부도, A/S등 서비스 중단 등(이하 "사고 등"이라 함)의 사유로 소비자단체,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대량의 리콜,환불,보상 요청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하 "RISK 관리 대상 상품"이라 한다)의 판매 및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사전 점검 절차를 포함한 업무 처리 기준 및 해당RISK관리 대상 상품 판매에 따른 각 부서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위험에 사전 대응하고,사고 등 발생 시 신속,적정 대응함으로써 고객 및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한다.

## 제4장 (입점협력사 건설성)

### 제5조 (입점협력사 신용평가)

①(주)엔에스쇼핑의 TV홈쇼핑 방송을 위한 상품 및 협력업체 선정 시, 협력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최소화 하고자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신뢰도를 평가한다.

1. 협력업체의 과거 경영실적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재무 건실성을 측정하기 위해 외부신용평가기관인 (주)나이스디앤비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일정한 등급 (신용평가등급 B등급, 현금흐름도 CR4) 이상 을 받은 협력사에 한해 방송상품 입점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기준은 별도의 신용평가기준을 통해 정한다.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 별첨)
2. 상품에 대한 클레임이나 A/S건 발생 시를 대비하여 협력업체의 A/S이행 능력을 확인하고, A/S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입점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입점협력사 기본원칙과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법인사업자

#### 2. 재무안정성, QM기준, 기업윤리 건전성 등 당사 규정 입점요건을 충족하는 협력사

- 재무안정성 : 신용평가등급 B등급 이상, 현금흐름도 CR4 이상
- QM기준 :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원산지, 법 준수여부 등
- 기업윤리 건전성 : 고객중심경영, 법적 분쟁 이력, 윤리적 결격사유

#### 3. 직제조사, 수입원, OEM유통사

※ OEM유통사 : 위탁생산, 브랜드 및 전문가 기획, 매입, 직접투자 등 상품에 대한 책임과 권한 보유 협력사

※ 단, 기준미달 협력사 중 특별한 입점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협력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점 결정

### [별첨1] 기업신용평가표

현금흐름 신용등급	A(CR-1)	B+(CR-2)	B(CR-3)	C+(CR-4)	C(CR-5)	D(CR-6) NR1 / NR2
AAA, AA+, AA0, AA-, A+, A0, A-	S등급				A등급	
BBB+, BBB0, BBB- BB+, B0, BB-	A등급				B등급	
B+, B0, B-	B등급				C등급	
CCC+, CCC0, CCC-	C등급				D등급	
CC	D등급				E등급	
C, D NR	E등급 : 협력관계 재검토 (제한)					

## 제5장(품질검사 및 소비자보호)

### 제6조(품질 검사 절차)

- ① (주)엔에스쇼핑의 TV홈쇼핑 방송을 위한 상품 및 협력업체 선정 시 제안된 상품은 반드시 (주)엔에스쇼핑 QA팀의 품질검사,공정 관리,배송 전 검사의 품질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입점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 ② 품질 검사는 상품 관련 각종 서류 검사,실물 검사,기능/성능 테스트,공정 실사 등을 통해 법적 기준, 안전성, 기능 및 성능, 포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1.상품군,매체별로 품질검사의 업무진행 방식,샘플 제출방법,품질서류에 차이가 있으며, 상세내용은 '나이스시스템'의 상품군별 품질검사·물류업무안내'를 참조한다
  - 2.상품분류 : 상품군별 분류  
(일반식품,건강식품,이미용,가정용품,건강용품,문화,서비스,스포츠/레저,유아동용품,인테리어 전기전자,정보통신,패션,패션잡화,보석/장신구,주방용품)

### 제7조(품질승인)

- ① 협력업체는 품질승인을 위하여 샘플과 품질서류를 (주)엔에스쇼핑 품질검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현장검사를 위한 일정 등을 협력해야 한다.
- ② 협력업체는 샘플 제출 시 고객에게 배송되는 포장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당사의 상품별 포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③ (주)엔에스쇼핑은 샘플검사 완료 후,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협력사로 택배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샘플을 협력사에게 반환 또는 구매하여야 한다.

검사항목	구체 검사항목	
서류검사	- 상품 및 협력사 인허가 관련 서류 확인 - 제품 안전성관련 성적서	상품과 관련된 서류전체 확인
실물검사	- 상품의 안전성 및 외관의 이상여부 - 상품사양, 표시사항, 구성확인 - 포장 상태의 적합성 확인 - 고객에게 제시된 수준의 기능, 성능	고객에게 배송 전 상태의 상품 전반사항 확인
현장검사	- 제조위생, 절차 등 법적기준 준수 여부 - 원료의 원산지, 제조년월 등	현장점검평가표(기준)에 따름

### 제8조(공정관리)

- ① 공정관리는 상품의 품질승인 이후부터 판매 이전까지 시행되는 품질보증활동으로 상품 생산단계에서의 공장지도 및 초기품질안정을 위해 시행 한다.
- ② 품질승인 이후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대량불량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며, 불량이 발생할 경우,지적된 불량항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이후 판매가 가능하다.

## 제5장(품질검사 및 소비자보호)

### 제9조(실물검사)

- ① 상품의 안정성 및 외관의 이상여부, 상품사양, 표시사항, 구성확인, 포장상태의 적합성 확인한다.

### 제10조(배송 전 검사)

- ① 센터 입고 상품의 경우 당사 물류센터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거점입고(집하), 직배송(지방), 직송(직송 위탁 포함)의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 제11조(상품판매 관련 Risk관리 규정)

- ① (주)엔에스쇼핑은 상품 결함, 과장 광고, 협력업체의 부도, A/S 등 서비스 중단 등(이하“사고 등”이라 함)의 사유로 소비자단체,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대량의 리콜, 환불, 보상 요청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하“RISK관리 대상 상품”이라 한다)의 판매 및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위험에 사전 대응하고, 사고 등 발생시 신속, 적정 대응함으로써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Risk관리 규정을 운영한다.
- ② 담당MD는 RISK관리 대상 상품 협력사에 세부적인 신용평가결과를 토대로 협력사를 검토하고,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을 통해 발생가능 RISK를 사전에 차단한다.
1. 의뢰방법 : 기업신용평가서(평가기관: 나이스디앤비, 크레딧), 이행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2. 검토부서 : 담당MD, 영업지원팀
  3. 의뢰기한 : 판매 예상일 D-2주

## 제6장(공정 경쟁 및 공정 거래)

### 제12조(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부당 거래 금지)

- ① (주)엔에스쇼핑은 협력 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어떤 부당한 강요나 불공정한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을 준용한다.
1. 부당반품의 금지
  2. 부당감액의 금지
  3. 부당한 대금 지급 지연 금지
  4. 부당한 강요행위 금지
  5.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6.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금지
  7.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 수령 금지
  8. 사업활동방해 금지
  9. 서면계약체결의무
  10. 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 제공의 금지
- ② 제1항의 사안을 위반한 임직원은 (주)엔에스쇼핑 윤리규범 실천지침 및 사규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 NS홈쇼핑 상품선정 기준 및 절차 ¶

---

### 제13조(친인척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 배제)

- ① 협력업체 임직원 등(주)엔에스쇼핑 임직원과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당해 협력업체 직원과 관계가 있는 (주)엔에스쇼핑 임직원이 해당 상품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배제한다.
- ② 제1항의 사안을 위반할 경우에는 담당 직원, 해당 관리자는 (주)엔에스쇼핑 윤리규범 실천지침 및 사규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연대책임을 가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해당 협력업체 및 상품에 대해서는 친인척인 임직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정을 재검토한다.
- ③ 이해관계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민법 제777조에 의거한 친척
    - 가. 8촌 이내의 혈족
    - 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 다.배우자
  - 2.민법 제769조에 의거한 인척
  - 3.(주)엔에스쇼핑 근무 이력이 있는 임원 등 기존 퇴사자
  - 4.계열사 관계자

### 제14조(협력업체의 독점 방지)

- ①(주)엔에스쇼핑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생산자 직접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생산자가 물류, A/S접수 및 처리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유통 행위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대행할 대행 협력업체를 통하여 입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 ② 제1항의 단서 조항과 관련하여, (주)엔에스쇼핑은 특정 대행 협력업체가 납품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 상품에 대해 복수의 대행 협력업체의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NS홈쇼핑 TV상품 선정 기준 및 절차'에 입각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 제15조(불만 접수 및 처리)

- ① 상품 및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에 불만이 발생할 경우,해당 협력업체는 (주)엔에스쇼핑 웹 사이트 내'고객센터' 또는 (주)엔에스쇼핑 NICE시스템(<http://nice.nsmall.com>)내'게시판'등의 채널을 통해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 제7장(퇴점 기준)

### 제16조(협력업체 거래 중단)

①(주)엔에스쇼핑은 협력업체가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거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을 SCM 및 협력사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업체와 공유해야 한다.

1. 원산지표기오류
2. 품질/광고 심의 관련 고의적인 허위서류 제출
3. 고의적인 허위/과장광고
4. 고의적인 허위주문

②(주)엔에스쇼핑은 협력업체가 사용흔적 상품 입고, 품질불량 반품 10%이상인 경우에는 1회 주의 조치, 3회 적발 및 주의 조치 누적 시 협력사에 거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익명제보창구 운영)

- ① (주)엔에스쇼핑은 익명제보가 가능한 "NS홈쇼핑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감사조직은 헬프라인을 통하여 접수된 불공정행위를 접수 및 시정한다.
- ② 협력업체는 담당MD 또는 익명제보 창구를 통하여 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별첨]

1. 기업신용평가표
2. 신용등급 및 현금흐름등급
3. 상품군별 이행보증보험 체결기준
4. 계약갱신거절기준



## [별첨1] 기업신용평가표

현금흐름 신용등급	A(CR-1)	B+(CR-2)	B(CR-3)	C+(CR-4)	C(CR-5)	D(CR-6) NR1 / NR2
AAA, AA+, AA0, AA-, A+, A0, A-	S등급				A등급	
BBB+, BBBO, BBB-, BB+, BB0, BB-	A등급				B등급	
B+, B0, B-	B등급				C등급	
CCC+, CCC0, CCC-	C등급				D등급	
CC	D등급				E등급	
C, D NR	E등급 : 협력관계 재검토 (제한)					

## [별첨2] 신용등급 및 현금흐름 등급

### ■ CLIP 신용평가등급

신용등급	등급정의
AAA	최상위의 상거래 신뢰도를 보유하여, 현재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대처 가능한 초우량의 신용수준
AA	양호한 상거래 신뢰도를 보유하여, 예측 가능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한 수준
A	우위의 상거래 신뢰도가 인정되지만, 예측 가능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수준
BBB	적정 수준의 상거래 신뢰도를 보유하지만, 장래의 거래안정성에 다소 부정적인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수준
BB	비교적 무난한 수준의 상거래 신뢰도를 보유하지만, 장래의 거래안정성에 부정적인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수준
B	단기적인 상거래 신뢰도는 인정되지만, 향후 환경변화에 따라 거래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수준
CCC	현재 수준에서 상거래 신뢰도가 제한적이며, 장래 거래안정성의 저하 가능성이 예상되어 주의가 요망되는 수준
CC	상거래 불이행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상위등급에 비해 거래안정성이 낮은 수준
C	상거래 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높아 향후 회복가능성이 낮고, 거래안정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현금거래가 요망되는 수준
D	상거래불능 상태의 매우 취약한 신용능력을 나타내어 거래안정성이 전무한 수준
NG	등급부재: 신용평가불응, 자료불충분, 폐(휴)업 등의 사유로 판단보류

※ 기업의 신용능력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표시되며 위 등급 중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의 6개 등급에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 기호가 첨부 될 수 있습니다.

### ■ 현금흐름등급

신용등급	등급정의
A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며 소요자금의 자체 창출능력이 매우 양호한 수준
B	현금흐름이 안정적이거나 소요자금의 자체 창출능력이 상위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위한 수준
C+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 수준 이상이나, 향후 환경악화에 따라 현금흐름의 저하가능성이 다소 있는 수준
C-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 수준이나, 향후 환경악화에 따라 현금흐름의 저하가능성이 존재하는 수준
D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낮은 수준이거나, 소요자금 대비 현금창출액이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취약한 수준
E	현금흐름 및 현금지급능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
NF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결여되었거나, 불완전한 재무정보 보유(원가명세서 부재)-판정제외
NR	결산자료 2개년 미만으로 현금흐름 산출 불가-판정보류

[별첨3] 상품군별 이행보증보험 체결기준

구분	일반 상품군	RISK 상품군	AS 상품군
상품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수축 상품 - 원산지 리스크 상품제외</li> <li>건강기능식품 - 식약처 고시형 제품</li> <li>화장품</li> <li>침구</li> <li>생활용품 - 전원, 전동제품 제외</li> <li>패션의류, 속옷, 잡화</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료, 원산지 리스크 상품 - 100% 국내산 가공식품 : 국산과 수입 구분 불가상품 (QM리스크상품 : 고춧가루, 참기름 등) - 화장품 성분 원산지 리스크 상품 - 유아, 아동 등 안전관리 상품 등</li> <li>건강기능식품 - 개별 인정형 제품</li> <li>패션 : 수입명품</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전제품 - 생활가전, 주방가전, 계절가전 - 이미용기기 - 건강용품(마사지기 등) - 기타 전기용품</li> <li>가구</li> <li>스포츠, 레저, 헬스용품 중 AS상품</li> <li>자동차용품 - 차량 전원 연결 제품 등</li> </ol>
보증기간	1년(잔존기간 6개월)	1년(잔존기간 6개월)	2년(잔존기간 1년)

구분	일반			RISK			AS		
	가입금액	가입기간	보험료	가입금액	가입기간	보험료	가입금액	가입기간	보험료
TV/TC	1천만원	1년	59,600원	3천만원	1년	178,800원	3천만원	2년	357,600원
SB/MC				1천만원	1년	59,600원	1천만원	2년	119,200원

※ 여행 및 무형서비스 상품(상조, 렌탈 등) 등의 경우 상품특성에 따라 별도 가입 및 기간적용

## [별첨4] 계약갱신거절 기준

### <계약갱신거절기준>

2017. 6. 30.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거래계약서를 반영한 (주)엔에스쇼핑의 거래기본계약서 갱신거절 조항(TV 5조, 쇼핑몰 제34조, 쇼핑북 제34조)에 따라, (주)엔에스쇼핑은 아래 기준에 의거해 협력사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거래기본계약 갱신거절 기준>

1. 상품 관련 중요내용(상표, 성적서, 인허가서류, 원산지, 제조년월일 등)에 대하여 같이, 이중/허위, 위조가 있는 경우
2. 최종 판매확정 상품과 다른 품질(브랜드, 원산지, 제조년월, 구성, 원료 등)의 상품이 배송(출고대기 포함) 된 경우
3. 리콜, 업무정지 등 정부기관의 행정처분 명령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경고 2회 누적된 협력사의 3번째 경고 사유가 발생된 경우
  - 1) 상품 결함과 관련된 중대사고(사망, 화재 등) 발생
  - 2)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해 다량의 강성클레임(대외기관 접수 등) 발생
  - 3) 상품불량으로 인한 정부기관의 강제리콜 명령 발생
  - 4) 법적 자격요건(지식재산권 등)을 준수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위탁·판매
  - 5) 법적 품질 부적합이 동일상품군 기준 년 3회 발생
5.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대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3회 이상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